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42호)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10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66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Ⅰ. 개 요 ····· 1

Ⅱ. 검토의견 ····· 4

1.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김윤의원안) ····· 4

2.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추가 (서명옥의원안) ····· 17

3.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김도읍의원안) ····· 30

※ 참고자료 ····· 37

Ⅰ.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4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 24.

(3) 회 부 일 : 2024. 1.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2.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91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5.

(3) 회 부 일 : 2025.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3.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1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4.

(3) 회 부 일 : 2025. 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

이에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김윤의원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상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의2.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1)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

	(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5)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6)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7)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8)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9)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0)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2)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13) 1)부터 12)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취업제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⑦ ----------취업제한아동학대관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련범죄----------.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취업제한명령 대상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⑦ (생 략)

□ 이어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14가지 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이러한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는 아동의 보호자에 한정되고, 그 외 타인은 제외되고 있음.

- 법원의 판결에서도 '보호자가 아닌 사람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고 있음[1].

□ 참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2023년의 경우 보호자가 아닌 타인의 비율은 아동학대 판단 전체 25,739건 중 3.3%인 846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

(단위 :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동학대 판단(전체)	30,045(100)	30,905(100)	37,605(100)	27,971(100)	25,739(100)
부모	22,700(75.6)	25,380(82.1)	31,486(83.7)	23,119(82.7)	22,106(85.9)
친인척	1,332(4.4)	1,661(5.4)	1,517(4.0)	879(3.1)	771(3.0)
대리양육자	4,986(16.6)	2,930(9.5)	3,609(9.6)	3,047(10.9)	1,874(7.3)
부모의 동거인	363(1.2)	444(1.4)	403(1.1)	193(0.7)	190(0.7)
유치원 교직원	155(0.5)	118(0.4)	140(0.4)	100(0.4)	59(0.2)
초·중·고교 직원	2,154(7.2)	882(2.9)	1,089(2.9)	1,602(5.7)	793(3.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20(1.1)	208(0.7)	319(0.8)	254(0.9)	259(1.0)
보육 교직원	1,384(4.6)	634(2.1)	1,221(3.2)	600(2.1)	356(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8(1.4)	556(1.8)	217(0.6)	175(0.6)	129(0.5)
기타 시설 종사자	63(0.2)	12(0.0)	93(0.2)	69(0.2)	50(0.2)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87(0.3)	14(0.0)	58(0.2)	8(0.0)	3(0.0)
위탁부	3(0.0)	4(0.0)	6(0.0)	2(0.0)	2(0.0)
위탁모	8(0.0)	16(0.1)	17(0.0)	9(0.0)	3(0.0)
아이돌보미	41(0.1)	42(0.1)	46(0.1)	35(0.1)	30(0.1)
타인	663(2.2)	565(1.8)	658(1.7)	573(2.0)	846(3.3)
기타	364(1.2)	369(1.2)	335(0.9)	353(1.3)	142(0.6)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8. 31.

□ 취업제한명령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보호자 외의 타인에 대해서도 아동관련기관의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고단806, 2020고단1687(병합), 2021고단2546 판결(병합) 등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되는 현행법상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 아동보호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취업제한명령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고,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재범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재범 관련 현황[2] >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동학대사범 접수인원	7,994	8,801	16,988	17,317	19,468
재범인원	539	716	1,200	1,953	2,239
재범률	6.7%	8.1%	7.1%	11.3%	11.5%

□ 한편,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인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존치시키면서 추가로 제3조제7호의3으로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를 신설하고 있는바, 효율적 입법을 위해서 신설보다는 기존의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에 보호자 외에 타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취업제한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취업제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는 점, “아동학대관련범죄”와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건태의원실 보도자료

2.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추가 (서명옥의원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공동육아나눔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복지전문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추가하는 것 등임(안 제29조의3 제1항제16호의2·제18호의2·제18호의3·제19호의2·제19의3·제19의4 및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7.·18. (생 략)	17.·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신 설>	18의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19. ---------- 학원·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신 설>	19의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신 설>	19의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신 설>	19의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

	육기관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 서비스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25. ~ 27. (생 략)	25.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신 설>	2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
<신 설>	3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행하는 사업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3. 제1항제18호의2의 국제학교 4. 제1항제18호의3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 5. 제1항제19호의2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제1항제19호의3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7. 제1항제19호의4의 대안교육기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 제7호·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1. ----------제18호의2·제18호의3·제19호·제19호의2·제19호의3·제19호의4---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제16호의2·제20호----------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산림청장: 제29조의3제1항제28호·제29호·제3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주요 검토 사항

□ 첫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 추가에 관한 사항임.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한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은 현재까지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명령에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 >

근거 법률	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외국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개인과외교습자(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안교육기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산림교육센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을 행하는 사업장

□ 취업제한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의 특성,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제주 소재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기관[3],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로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와 동일·유사한 성격의 기관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 기관·단체는 상담, 학업지도, 특수교육 관련 치료 서비스를 지원 또는 제공하는 기관이며,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목재문화체험장·산림복지전문업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아숲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등이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아동과의 접촉 개연성이 높은바, 아동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대상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은 도립 또는 시립학교,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으로서 개정안에서는 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함.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주 소재 국제학교,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지방 교육기관을 취업제한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 6. (생 략)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 18. (생 략)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 25. (생 략)

□ 그 외,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내용이 포함[4]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 12. 5.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라는 점은 법안 심사 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둘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해서 실시한 전력조회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것임.

□ 현행「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5]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취업하려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포함)의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아동관련기관 중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개정안에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려는 국제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조례로 설치되는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전력을 확인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으로 보려는 것임.

---

4)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282호)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최근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 등을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각 교육기관에 파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교육기관 지원 인력을 총괄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아동관련기관(교육기관)의 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6].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관련기관의 확대와 교육기관 취업자 등에 대한 신속한 범죄전력 확인을 통해 아동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교육감·교육장의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로 교육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와 혼란·비효율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으로 '학습부진아등'이라는 용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현행 제29조의3제1항제18호 및 개정안 제29조의3제7항제2호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3.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김도읍의원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 배치·활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 특수학교, 유치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2조제1항).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참고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아동보호구역 대상 시설은 2024년 5월 기준 총 1,746개소이며, CCTV는 17,514대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음[7].

7) 국회 예산정책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166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시·도	시·군·구	시설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대)
		계	도시공원 (제1호)	어린이집 (제2호)	초등·특수학교 (제3호)	유치원 (제4호)	
서울	4	241	105	6	125	5	5,061
부산	16	203	15	50	121	17	2,372
인천	1	16	-	6	6	4	16
대전	1	150	66	35	23	26	982
경기	3	782	7	728	47	-	7,828
강원	3	47	29	4	14	-	118
전북	4	101	39	18	28	16	308
전남	2	50	-	11	37	2	105
경북	1	24	24	-	-	-	138
경남	4	132	46	20	65	1	586
합계	**39**	**1,746**	**331**	**878**	**466**	**71**	**17,514**

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제주에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취합 후 제출

□ 한편,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돌봄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바,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생 87.7%, 중학생 78.0%, 고등학교 67.3%로 나타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8] 중 학교교과교습학원[9]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은 「국민건강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증진법」 제9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도 해당되는바, 그 조사를 위하여 파악한 전국 사설학원 수는 2024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90,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현황 >

(단위 : 개소수, %)

구분	사설학원수	현황별 비율
계	89,285	100
서울	15,718	17.6
부산	5,033	5.6
대구	4,368	4.9
인천	4,355	4.9
광주	3,905	4.4
대전	2,135	2.4
울산	2,130	2.4
세종	1,095	1.2
경기	24,787	27.8
강원	2,149	2.4
충북	2,836	3.2
충남	3,289	3.7
전북	3,811	4.3
전남	2,587	2.9
경북	3,566	4.0
경남	6,305	7.1
제주	1,216	1.4

※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결과 보고(2024.11.29일 기준)

□ 개정안은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다만, 현재 아동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유괴 등에 취약한 저연령 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중·고등학생 등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아동도 포함되게 되는데, 현행 법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의 확대는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그 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의무적 배치와 관련된 것임.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되어 왔고 2022년부터 자치경찰 사무로 전환하여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바, 개정안과 같이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범죄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퇴직한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 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집중순찰을 통해 성폭력·학교폭력·유괴·실종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 및 비행 청소년 선도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 특히, 아동안전보호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 시·도 모두에서 운영 중에 있어 의무화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인력 소요, 예산[10],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경찰청에서는 제한된 예산 규모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

10)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2년까지 "아동안전지킴이(자치)"사업(2022년 예산 645억 1,600만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안전 보호인력인 "아동안전지킴이" 배치·운영 비용을 지원한 바 있음.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황 자료 및 경찰 업무량 증가로 인한 증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활동을 하루 3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노년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에 기반한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현황 >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 원	10,813	1,218	274	340	526	230	196	166	88	1,811	894	650	500	552	745	800	819	864	140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ㅇ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이용대상)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ㅇ (지원센터)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하여 1:1 전문상담부터 학업·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2	26	17	9	9	6	3	5	1	32	13	13	16	10	23	15	21	3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목표달성 후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지원

ㅇ (상담지원) 초기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 시 심층 상담 등 연계 지원

ㅇ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ㅇ (진로지원) 진로탐색, 진로체험 등을 돕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자립·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자립·취업 서비스 지원

ㅇ (건강지원) 무료 급식 및 건강검진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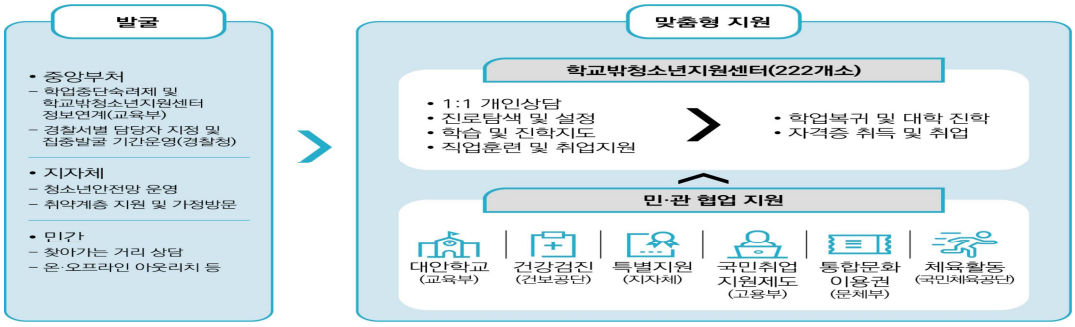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2】	제주국제학교 개요 및 현황

□ 제주국제학교 개요

ㅇ (정의)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운영되는 학교

ㅇ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 제주국제학교 설립·운영 현황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설립 · 운영 중

구 분	NLCS Jeju	BHA	SJA Jeju	KIS Jeju	
				유·초·중	고
본교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영국 런던, 1850~)	Branksome Hall (캐나다 토론토, 1903~)	St. Johnsbury Academy (미국 버몬트, 1842~)	-	-
개교일	2011.09.26.	2012.10.15.	2017.10.23.	2011.09.19.	2013.08.19.
설립	㈜제인스*			제주도교육청	㈜YBM JIS**
운영	㈜제인스*			㈜YBM JIS** (위탁운영)	㈜YBM JIS**
개설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국내 · 외 학력 인정				
학급수	82개	66개	68개	41개	14개
학생정원	1,751명	1,495명	1,254명	782명	480명
학생현원***	1,305명	1,189명	1,059명	1,087명	
배치인력	313명	273명	248명	188명	72명
교원	206명	211명	175명	117명	58명
행정직원	66명	49명	41명	71명	14명
기타****	46명	13명	32명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

**㈜YBM의 자회사

***24/25 학사연도 학기시작일('24.8~9월) 기준 (제인스 업데이트 완료)

****교육지원직, 기능직, 업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정원 외)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3】	개인과외교습자 개요

※ (개인과외교습자 정의) 학원법 제2조제3호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구 분	학 원	교 습 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수	▸ 동시 10인 이상	▸ 동시 9인까지 (피아노는 5인)	▸ 동시 9인까지
건축물용도 (교습장소)	▸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이상)교육연구시설	▸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이상)교육연구시설	▸ 학습자의 주거지 (주택) ▸ 교습자의 주거지 (주택) ▸ 입주민교육시설
시설규모	▸ 조례 [별표1]에 따른 시설 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 없음
명칭사용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해당 없음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4조제8항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4조의2제9항
성범죄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조회 ▸ 강사, 직원 : 설립·운영자	▸ 교습소신고자 : 교육지원청 조회 ▸ 보조요원: 교습자	▸ 개인과외신고자 : 교육지원청 조회
강사 채용 가능 여부	▸ 강사 채용 가능	▸ 강사 채용 불가 ▸ 임시교습자(출산,질병 등) 및 보조요원(교습불가) 채용 가능	▸ 강사 채용 불가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 적용	▸ 적용	▸ 적용
교습비등 조정명령	▸ 적용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함)	▸ 적용	▸ 적용
교습비등 영수증발급	▸ 적용	▸ 적용	▸ 적용
교습과목 및 대상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2]	▸ 1인 1개소 1과목 (초·중·고, 시험준비생 지식·기술·예능교습)	▸ 여러 과목(초·중·고, 시험준비생, 지식·기술·예능 교습)
교육 환경정화	▸ 적용 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함)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구분	'18.12월	'19.12월	'20.12월	'21.12월	'22.12월
개인과외교습자(단위:명)	129,000	134,330	144,197	146,721	150,810

자료: 교육부

【참고4】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특수교육지원센터**

○ **(법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역할)**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등

센터 수(개)	배치 인력 현황(명)		
	교사	일반직 공무원	기타 (치료사, 지원인력 등)
197	1739	47	572

※ 출처: 2024 특수교육통계(교육부)

□ **시도특수교육원**

○ **(법적 근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 **(역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 교원연수, 정책연구, 자료 개발, 행동중재, 체험관 운영(안전체험, 특수교육공학, 장애이해 등) 등

※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24년 기준)

교육원* 수(개)	인력 현황(명)		
	원장·교육전문직	교사	일반직 공무원 외
4	24	88	49

* 대전특수교육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대구교육청 특수교육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 · 단체**

○ **(법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역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 **(현황)**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한 치료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24년 기준, 단위: 개)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치료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기관	시도 인증 사설치료실
453	2	385	4,020	1,641

* 자료: 교육부

【참고5】	대안교육기관 개요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

※ 17개 교육청, 259개 기관 등록('24.10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7	11	11	7	8	259

자료: 교육부

【참고6】	유아숲 체험원 개요

□ 유아숲체험원 개요

○ (정의)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유아숲체험원 운영 인력 배치 기준(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

○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

○ 전국 유아숲체험원은 501개소 등록·운영 중('25년 1월 기준)

계 (개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501	93	395	13	205	14	186	5	43	27	16	-	72	18	52	2	70	12	55	3	104	21	80	3	7	1	6-	

자료: 산림청

【참고7】	산림교육센터 개요

□ 산림교육센터 개요

○ (정의) 청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역할) 숲과 지역 사회를 연결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산림교육 선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보급
- 교육·청소년 정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기탐색 기회 제공
-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등

○ (지정기준)

- 시설: 10만㎡ 이상, 강의실 50명 이상, 실내실습장 200㎡ 이상, 도서실 등
- 인력: 상근관리자 2명(산림교육 전문 인력 1명 이상) 확보
- 프로그램: 연중 산림교육 계획 및 학교교원 연수 프로그램 마련

□ 지정 현황

○ 전국 22개소 지정·운영(국립 11, 공립 8, 사립 3)

* 연도별 : ('13) 2 → ('16) 6 → ('19) 12 → ('23) 24개소

합계	강원도	서울·경기	충북	대전·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경남	제주
24	3	4	2	4	1	2	5	2	1

자료: 산림청

【참고8】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교육 현황

□ 산림교육전문가 개요

○ (정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58개소)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전문가 유형】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 지도, 교육하는 사람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사람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 지도, 교육하는 사람

□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22년말 기준)

구 분	계(명)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계	33,188	2,518	2,642	2,824	3,450	2,928	3,112	15,714
숲해설가	19,791	1,375	1,396	1354	1,583	1,551	1,592	10,940
유아숲 지도사	10,020	831	920	1143	1,470	991	1,197	3,468
숲길등산 지도사	3,377	312	326	327	397	386	323	1,306

* 2013년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산림교육 현황

(단위: 천명)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2,309	2,745	3,987	5,104	6,625	3,264	4,973	5,973	6,068	6,394
산림교육	2,182	2,584	3,776	4,834	6,304	3,137	4,673	5,607	5,673	5,949
· 숲해설	1,339	2,062	2,857	3,368	4,285	2,122	2,685	3,295	3,307	3,375
· 유아숲	843	522	919	1,466	2,019	1,015	1,988	2,312	2,366	2,574
산림치유	127	161	211	270	321	127	300	366	395	445

자료: 산림청

【참고9】	목재문화체험장 현황

□ 목재문화체험장 개요

○ 목재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재교육을 활성화 하고, 국산목재 이용 및 목재의 다양한 기능 구현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 목재문화체험장 목재교육전문가 배치 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목재교육전문가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

○ 전국 목재문화체험장은 43개소 조성·운영('22년말 기준)

합계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0	2	1	1	4	6	3	4	4	8	7	9	1

※ '15년조성된 강원 양양 목재문화체험장은 화재로 미운영

자료: 산림청

【참고10】	산림복지전문업 현황

□ 산림복지전문업 개요

○ (정의)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

○ (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유형)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산림복지법 시행령 [별표 5]>

종류	업무범위	자격요건	
		전문인력	시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산림치유 지도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사무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업**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교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3명 이상**	사무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유아숲교육업**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및 지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사무실
4. 제3조제4호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업**	등산 또는 트레킹에 대한 해설 및 지도·교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사무실
5.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사무실

□ 산림복지전문업 현황(누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건)
합 계	237	407	569	754	952	1,098	1,258	1,416
종합산림복지업	5	14	19	26	34	43	51	77
산림치유업	8	19	31	45	77	91	114	131
숲해설업	151	207	269	344	415	472	534	590
유아숲교육업	64	153	224	294	371	429	487	540
숲길등산지도업	9	14	26	45	55	63	72	78

자료: 산림청